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296

제출년월일 : 2012. 8. 16.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안산화랑오토캠핑장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캠핑장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캠핑장 사전예약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캠핑장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캠핑장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시설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

□ 제정 조례안 : 불임

□ 관계법령발췌서 : 관계 상위 법령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비용추계서) : 불임

□ 사전예고(결과) : 불임

- 입법예고 : 2012. 06. 26. ~ 07. 16.

□ 기타 참고사항 : 불임

-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정 계획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오토캠핑장의 명칭은 안산화랑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7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수기"란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캐라반, 캐라반사이트, 오토캠핑사이트 등 그 밖의 모든 편의시설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안산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전 예약) ①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신청은 시설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예약이 성립한다.

- ② 예약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하여야 하며, 한 사람이 1개 캠핑 시설만을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2와 같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용료, 샤워장 사용료는 제외한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전액

2. 공무 수행상 사용하는 사람 : 전액

3.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 50퍼센트

4.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외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 30퍼센트

5.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30퍼센트

6.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 자녀 이상 가족으로 자녀 중 만 18세 이하를 포함한 가족 이용자 : 50퍼센트

7. 안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 : 전액

④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⑥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 대상은 1개 시설에만 한정한다.

제7조(사용료의 계시) 관리자는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캠핑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징수 방법 등) ① 사용료는 별표3에 따른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안산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설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4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3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 등) ① 시장은 캠핑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은 관련서류 제출 및 관계자에 대한 출석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반 운영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관 실·과 | | 관 광 과 |
|--------|-------|-----------|
| 입 | 실·과장 | 관광과장 |
| 안 | 직위·성명 | 최 경호 |
| 자 | 담당·팀장 | 관광개발계장 |
| | 직위·성명 | 김 기선 |
| | 담당자 | 고복규 |
| | 성명·전화 | (행정 3408) |

[별표 1]

캠핑장 사용료 기준(제6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기준

(단위 : 원)

| 시설별 | 사용기준 | 성수기 (7~8월) | 비수기 | | 비 고 |
|---------|---------|---------------|---------------------|---------|----------|
| | |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 일요일~목요일 | |
| 캐라반 | 4인 | 100,000 | 80,000 | 60,000 | |
| 캐라반사이트 | 1개소/1대당 | 40,000 | 40,000 | 30,000 | 1면 기준 |
| 오토캠핑사이트 | 1개소/1대당 | 25,000 | 25,000 | 20,000 | 1면 기준 |
| 전기사용료 | 1개소/1회당 | 3,000 | 3,000 | 3,000 | 1박 기준 |
| 샤워장 | 1회 | 1,000 | 1,000 | 1,000 | 1일 1회 기준 |

2.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 가.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한다.
- 나. 1면의 캠핑장에 6명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하는 1인당 3,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 다. 캐라반 사용료는 기준정원 초과 시 1인당(중학생 이상) 5,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 라.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 1) 2시간까지 : 10,000원
 - 2)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 15,000원
 - 3)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별표 2]

사용료 반환 기준 (제6조 관련)

| 구분 | 내용 | 반환 기준 | 비고 |
|----------------------|--|--|---------------------|
| 개라반사이트, 오토캠핑사이트 등 |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90 반환 | 선납금액 반환 |
| |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80 반환 | 선납금액 100분의 80 반환 |
|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 반환 | 선납금액 100분의 70 반환 |
| | 예약 · 선납된 경우로서 친戚 시민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 을 할 수 없거나 캠핑장 주의 사항으로 인하여 시설사용 이 불가한 경우 | 기임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 |

[별표 3]

캠핑장 시설 사용권(제8조 관련)

| | |
|----------------------|---------------------------|
| No 20 -000001 | No 20 -000001 |
| 캠핑장 시설사용권(원부) | 캠핑장 시설사용권(사용자 보관용) |
| • 사용료 : 원(국) 원(원) | • 사용료 : 원(국) 원(원) |
| • 사용시설 : | • 사용시설 : |
| • 사용기간 : ~ | • 사용기간 : ~ |
| • 사용자 | • 사용자 |
| - 주소 : | - 주소 : |
| - 성명 : ♂ 원 | - 성명 : ♂ 원 |
| 위와 같이 사용료를 정수하였음. | 위와 같이 사용료를 정수하였음. |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안산화랑오도캠핑장 | 안산화랑오도캠핑장 |

[별표 4]

캠핑장 사용자 수칙(제11조 제2항 관련)

이 끝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여가를 위하여 사용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임대

-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시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용료

- 사용료는 사용료 정수기준에 따르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소

-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동차

- 23:00부터 07:00까지 자동차의 출입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다방의 차량 진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음

- 침한 소음에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노래방기기, 춤장뷔페, 확성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 21:00부터 07:00까지는 정숙시간이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안 됩니다.

6. 위생

- 석수·수도꼭지는 석수만을 공급하며, 이외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오·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7. 동물

- 모든 동물을 항상 사람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합니다.

- 풍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 되며, 캠핑장내에서 반드시 솔로 메이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 캠핑장 내 전기와 수족의 보호를 위하여 핫부드 봉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캠핑장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홍보

- 캠핑장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을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활동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상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해가 필요할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2. 텐트 내에서는 버너, 촛불, 모기향 등 화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13. 캠핑장 이용인원을 허위로 예약하거나 사용자 수칙을 위반한 사람을 시설 사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제4조제1항
-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안)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안산화랑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위탁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안산시에서 출자한 법인¹⁾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동 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조례를 적용·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공포 이후 본격적인 개장·운영을 위한 시설 위탁운영자의 선정 및 운영 준비과정의 일정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의 위탁운영 비용을 추계하도록 한다.
- 사무위탁 운영을 위한 비용·운영활성화·서비스 수준 및 전문성·공익성 측면을 고려하여 직영·공사위탁·민간위탁 중 적절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판단되는 안산도시공사 위탁운영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최근 10년간 생산자물가상승률(3.06%)을 고려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한다.

1)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원)

|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비 고 |
|--------------------------|--------------------|--------------------|--------------------|--------------------|--------------------|-----|
| 총 소요액 | 462,806,286 | 443,988,959 | 457,575,021 | 471,576,817 | 486,007,067 | |
| 인건비 | 216,958,368 | 223,597,294 | 230,439,371 | 237,440,846 | 244,758,035 | |
| 일반관리비 | 10,847,918 | 11,179,865 | 11,521,069 | 11,871,511 | 12,237,902 | |
| 사무관리비 | 25,000,000 | 25,765,000 | 26,553,409 | 27,365,043 | 28,203,341 | |
| 가족캠페장 관리 · 운영 위탁사업 | 128,000,000 | 131,916,800 | 135,953,454 | 140,113,630 | 144,101,107 | |
| 재료비 | 50,000,000 | 51,530,000 | 53,106,818 | 54,731,887 | 56,406,682 | |
| 자산취득비 | 32,000,000 | 0 | 0 | 0 | 0 | |
| 위탁수수료 2) | 0 | 0 | 0 | 0 | 0 | |
| 계 | 462,806,286 | 443,988,959 | 457,575,021 | 471,576,817 | 486,007,067 | |

다. 재원조달방안: 자체재원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문화체육관광본부 관광과장(최경호)

2) 안산도시공사 위탁운영 방식의 경우에는 이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 포함하지 않음

(제2-2쪽)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원)

| 구 분 | 1차연도 (2013년) | 2차연도 (2014년) | 3차연도 (2015년) | 4차연도 (2016년) | 5차연도 (2017년) | 계 |
|---------------------|------------------------|------------------------|------------------------|------------------------|------------------------|---------------|
| 세 입 | 323,690,115 | 333,951,092 | 344,537,342 | 355,459,175 | 366,727,231 | 1,724,364,955 |
| 시설사용료 | 323,690,115 | 333,951,092 | 344,537,342 | 355,459,175 | 366,727,231 | 1,724,364,955 |
| 임대수입 | - | - | - | - | - | - |
| 기타수입 | - | - | - | - | - | - |
| 세 출 | 462,806,286 | 443,988,959 | 457,575,021 | 471,576,817 | 486,007,067 | 2,321,954,130 |
| 인건비 | 216,958,368 | 233,597,294 | 230,439,371 | 237,490,816 | 244,758,035 | 1,153,243,884 |
| 일반관리비 | 10,847,918 | 11,179,865 | 11,521,969 | 11,874,541 | 12,237,902 | 57,662,195 |
| 사무관리비 | 25,000,000 | 25,765,000 | 26,553,409 | 27,365,943 | 28,203,341 | 132,887,693 |
| 공공운영비 | 128,000,000 | 131,916,800 | 135,953,454 | 140,113,630 | 144,401,107 | 680,384,991 |
| 재료비 | 50,000,000 | 51,530,000 | 53,106,818 | 54,731,887 | 56,106,682 | 265,775,387 |
| 자산취득비 | 32,000,000 | 0 | 0 | 0 | 0 | 32,000,000 |
| 위탁수수료 ³⁾ | 0 | 0 | 0 | 0 | 0 | - |
| 재원 조달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 2014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 2017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 - |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 | - | - | - | - |
| | 지방세수입 | - | - | - | - | -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 - | - |
| | 기 금 | - | - |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 - |

3) 안산도시공사 위탁운영 방식의 경우에는 이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무가가치세(무가가치세법 제14조)를 포함하지 않음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2296 |
|----------|------|

제안년월일 : 2012. 8. 29.
제 안 자 :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캠핑장 운영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위탁 범위를 명확히하고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성을 높이고 지도감독에 따른 조치사항을 추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리운영의 위탁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조)
- 사전예약에서 19세라는 성인을 삭제하고 내용을 추가함.(안 제5조)
- 사용료 반환내용을 명확히하고 감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안 제6조제3항에서 제7조로 신설하고 감면의 범위를 한부모가정까지 확대하고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상위법령이나 관련조례에 맞게 정비함.
- 지도감독 후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함.
(안 제14조)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 ·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 · 운영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중 “안산시에서 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법인 ·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자한 법인”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예정일 1개월 전부터”를 “월의 전월 1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19세 이상의 성인이 하여야 하며”를 삭제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7조제2호가목과 같은 조 제3호나목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안 제6조제2항을 “관리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2와 같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를 “관리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용료, 샤워장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전액감면

-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
- 다.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 가. 안산교육장 및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안산시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자녀 가정

3. 100분의 30 감면

- 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나. 타 지역 교육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외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 ④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⑥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 대상은 1개 시설에 한한다.

안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안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안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그 밖에 시설이용” 를 “사용자”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안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안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안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안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 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안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 · 운영조례안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원안 | 수정안 |
|---|--|
| <p>제4조(관리 · 운영의 위탁)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u>안산시</u>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법인 ·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5조(사전 예약) ①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신청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예약이 성립한다.</p> <p>② 예약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하여야 하며, 한 사람이 1개 캠핑 시설만을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다.</p> | <p>제4조(관리 · 운영의 위탁) -----</p> <p>-----</p> <p>-----</p> <p>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자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p> |
| <p>제6조(사용료 등)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2와 같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용료, 샤워장 사용료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전액 2. 공무 수행상 사용하는 사람 : 전액 3.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 · 중 · 고 | <p>제5조(사전 예약) ① -----</p> <p>-----</p> <p>월의 전월 1일부터 -----</p> <p>-----</p> <p>-----.</p> <p>② 예약은 한 사람이 1개 캠핑 시설만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단, 제7조제2호가 목과 같은 조 제3호나 목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p> <p>제6조(사용료 등) ① (원안과 같음)</p> <p>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p> <p>③ <삭 제></p> |

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 50퍼센트

4.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외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 30퍼센트

5.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30퍼센트

6.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 자녀 이상 가족으로 자녀 중 만 18세 이하를 포함한 가족 이용자 : 50퍼센트

7. 안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 : 전액

(4)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6)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 대상은 1개 시설에만 한정한다.

<신설>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용료, 샤워장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전액감면

-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
- 다.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 가. 안산교육장 및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

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안산시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자녀 가정

3. 100분의 30 감면

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타 지역 교육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외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④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⑥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 대상은 1개 시설에 한한다.

제7조(사용료의 계시) 관리자는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캠핑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징수 방법 등) ① 사용료는 별표3에 따른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 까지 안산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사용료의 계시) (원안과 같음)

제9조(사용료의 징수 방법 등) ①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1. (원안과 같음)

2. (원안과 같음)

3. 사용자 -----

| | |
|--|--|
| <p><신 설></p> <p><u>제10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u>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설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p> <p><u>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u>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4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u>제2항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u></p> <p><u>제12조(변상책임) (생략)</u></p> <p><u>제13조(보험가입) (생략)</u></p> <p><u>제14조(감독 등)</u> ① 시장은 캠핑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u>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u> 시장은 관련서류 제출 및 관계자에 대한 출석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반 운영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p> <p><신 설></p> <p><u>제15조(준용) (생략)</u></p> <p><u>제16조(시행규칙) (생략)</u></p> <p>[별표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가.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00부터 | <p>4. 그 밖에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p> <p><u>제11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u> (원안과 같음)</p> <p><u>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u> ①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p> <p>③ <u><삭 제></u></p> <p><u>제13조(변상책임) (원안 제12조와 같음)</u></p> <p><u>제14조(보험가입) (원안 제13조와 같음)</u></p> <p><u>제15조(감독 등)</u> ① (원안과 같음) ② <u>제1항에</u> ----- ----- ----- -----</p> <p>③ <u>시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u>제16조(준용) (원안 제15조와 같음)</u></p> <p><u>제17조(시행규칙) (원안 제16조와 같음)</u></p> <p>[별표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가. ----- |
|--|--|

다음 날 12:00까지로 한다.

나. (생략)

다. (생략)

라.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1) 2시간까지 : 10,000원

2) (생략)

3) (생략)

----- 11:00 -----.

나. (원안과 같음)

다. (원안과 같음)

라.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1) 1시간초과 2시간까지 : 10,000원

2) (원안과 같음)

3) (원안과 같음)